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41
----------	------

2025년 3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월 31일 신복자 의원 (찬성 13인)
-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2월 2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신복자 의원)

#### 1. 제안이유

- 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하지만 오래된 풍습인 뿌리는 방법으로 시행된 장사를 자연장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024년 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10조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음.
- 이에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자연장의 방법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기존 자연장의 방법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자연장의 방법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을 포함하도록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연장의 정의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도록 변경 개정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에 자연장의 방법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리는 방식으로 장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등).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①	시립자연장지에 <u>자연장</u>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u>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u> 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①	-----	<u>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u> 을 묻는 방식으로 <u>자연장</u> 을 ----- <u>골분</u> -----
② <u>자연장</u> 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u>골분을 묻는 방식의 자연장</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u>		

<p>③ (생략)</p>	<p><u>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	---

##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 동 개정안은 2024년 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2조제3호, 10조 등이 신설되어 자연장의 정의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기존 자연장의 방법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연장의 방법(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을 포함하도록 신설(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1) 개정안의 용어 변경(제14조의2 제1,2항)

- 현행 조례는 제14조의2 제1,2항에서 장사의 방법 중 하나로 '자연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자연장의 정의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 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의 자연장의 의미를 나누어 규정하였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사법 제10조에서 자연장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자연장의 방법을 1.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와 2.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로 나누고 있음.
- 이에 현재 조례상에 ‘자연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형식의 자연장’으로 방법적 의미를 담아 수정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장’의 내용을 담아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

서는 안 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 2) 자연장 방법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 신설(제14조의2 제3항)

- 본 개정안은 제14조의2 제3항에 자연장 방법으로 골분을 뿌리는 방식을 신설하고 있는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을 시립자연장지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u>&lt;신설&gt;</u>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③ <u>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u>

- 현재, 장사법 제2조 13항에 ‘자연장지’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의되어 있기에 현행 조례와 같이 ‘시립자연장지’를 골분을 뿌리는 방식의 자연장이 가능한 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자연장 가능 시설은 용미1묘지B구역(과주시 광탄면 용미리 위치)뿐이며 이미 47.6%에 안장되어 있어 9.680㎡정도의 면적이 남아있는 상태임. 이에 비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은 5개 지역 13,010㎡ 면적에 이르며, 이외에 자연장지에서도 산분장이 가능함

## □ 서울시 자연장지 현황

구분	위치	연면적	안치능력	2024년	누계	운영시기	비고
합계		55,313㎡	50,296위	2,406위 (일 7.2위)	32,011위		골분을 묻는 방법, 뿌리는 방법(산분장) 모두 가능
자연장 (능선형)	용미1묘지 B구역	18,473㎡	34,917위	2,406위 (일 7.2위)	16,632위	'08.11.13. ~	
자연장 (수목형)	용미1묘지 C구역	36,840㎡	15,379위	-	15,379위	'11.4. ~ '18.4.13.만장	

## □ 서울시 산분장 가능 시설 현황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장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구 분	용미1묘지 추모의숲	승화원 제1유택동산	승화원 제2유택동산	서울추모공원 유택동산	용미1묘지 나비정원
조성년도	2003	1998	2021	2012	2014
규 모	11,733㎡	524.28㎡		103㎡	650㎡
안치 누계('25.1.현재)	13,563위	125,801위		19,542위	2,396위

※ 집행부 의견 : 원안가결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자연장의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자연장의 방법’ 규정을 「장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미 행해지고 있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 형태를 ‘자연장’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려는 것임
- 이에 현재 조례상 ‘자연장’을 법령 및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반영하고, ‘시립자연장지’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의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복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4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1월 31일

발 의 자: 신복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 석, 신동원, 유정인,  
윤기섭,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자연장의 정의가 확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에서 자연장의 방법을 확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기존 자연장의 방법을 '확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 나. 자연장의 방법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을 포함하도록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자연장을”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는 방식으로 자연장을”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골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장”을 “골분을 묻는 방식의 자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①  시립자연장지에 <u>자연장을</u>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u>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u>을 묻되, 용기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p> <p>② <u>자연장에</u>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p> <p>1. 2. (생   략)</p> <p><u>&lt;신   설&gt;</u></p> <p>③ (생   략)</p>	<p>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①  ----- <u>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u>을 묻는 방식으로 자  <u>연장을</u> ----- <u>골분</u>-----  -----  -----  -----  -----.</p> <p>② <u>골분을 묻는 방식의 자연장-</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u>시립자연장지에 화장한 유골  의 골분을 뿌리는</u> 방식으로 자  <u>연장을</u> 하는 경우에는 <u>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u> 하여야 하며,  <u>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  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  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  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  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u>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sup>1)</sup>을 반영하여 법률과 조례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각종 자료 등을 검토결과<sup>2)</sup> 별도의 비용수반은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4.]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 2) 골분을 뿌리는 자연장을 하는 경우 물을 뿌려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별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